

문 의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과 장 이춘무 서기관 여덕호	042-481-5930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과 장 송은주 사무관 우연선	044-203-703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7월 19일(목)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특허청**(청장 성윤모) 및 **16개 시도 교육청***은 오는 7월 20일 금요일 서울 코리나아 호텔에서 초·중·고 학생 창업체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강은희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장휘국 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청(설동호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최교진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 강원도교육청(민병희 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김지철 교육감), 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임종식 교육감),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석문 교육감)

○ 이번 협약은 초·중·고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갖춘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교육부-특허청-시도교육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1, 2] 참조

< 업무협약 목적 및 협약기관의 역할 >

- **(목적)**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문제해결력,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메이커교육을 포함한 창업 체험교육, 발명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 및 기관 간 사업 연계 강화
- **(교육부의 역할)** 콘텐츠 개발, 제도적 지원 및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대국민 인식 개선 위한 문화 확산, 정책 협력 체계 구축
- **(특허청 역할)** 발명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 연수 지원 및 발명교육센터 확대, 교육소외계층 대상 발명교육 지원, 발명·창업체험교육 사업 연계 지원
- **(시도교육청 역할)** 메이커교육을 포함한 창업체험교육, 발명교육과 교과 과정 연계 강화, 교원 연수 운영 및 교원 대상 인식 개선 지원,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학생 창업체험교육 확산 등

- 우선, 교육부와 특허청은 △ 학생·교원 대상 콘텐츠(창업체험교육, 발명교육)를 공동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기존에 운영 중인 ‘창업교육지원 민관 실무협의회’*와 ‘발명교육 관계자 회의’**를 확대 운영하여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공공·민간기관간 창업교육 관련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실무적 기구('17.12월 1차 회의 개최)
- ** 발명교육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특허청과 시도교육청의 실무협의체(연 4회 운영)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혁신 성장의 핵심 사업인 창업이 활성화 되고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부는 특허청-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이 창의적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성윤모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적화된 교육방법이다.”라고 언급하며,
 - “발명교육과 창업체험 교육을 연계함으로써 초·중·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진로를 개척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초중고 창업체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2. 초중고 창업체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전문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우연선 사무관(☎ 044-203-7037), 박상준 교육연구사(☎ 044-203-6225),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여덕호 서기관(☎ 042-481-5930), 사무관 이동훈(042-481-82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참고1

초·중고 창업체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 추진 배경

- 혁신성장의 핵심 사업인 '창업' 활성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도전정신(기업가정신)을 함양할 필요
- 초·중등 단계에서의 창업체험교육(발명교육, 메이커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특허청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한 추진체계 강화

□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18.7.20.(금) 14:30~15:20(50분) / 서울 코리어나 호텔 스테이트룸(7층)
- (참석자) 교육부 차관, 특허청 청장, 희망 시도교육청* 교육감 및 부교육감 총 18명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협약 내용) 창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역할 및 협력 사항
 - ① (교육부)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구축
 - ② (특허청) 발명교육센터 확대, 교원 연수 지원, 콘텐츠 개발 협력 등
 - ③ (시도교육청) 교과연계 수업 강화 및 교원 연수 운영, 지역 인프라 활용한 센터(지역창업체험센터, 발명교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적극 운영

□ 협약식 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20 ~ 14:30	(10')	▪ 사전 환담	
14:30 ~ 14:33	(3')	▪ 여는 말 및 국민의례 ▪ 협약체결 취지 안내	사회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14:33 ~ 15:10	(37')	▪ 기관대표 소개 및 인사말씀	
15:10 ~ 15:20	(10')	▪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	

초·중·고 학생 창업체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교육부와 특허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초·중·고 학생들이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갖춘 창의적 혁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문제해결력,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메이커교육을 포함한 창업체험교육, 발명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약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기관 간 사업 연계 강화 및 사업 발굴 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내용)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 ① 교육부는 학교 수업 기반의 메이커교육을 포함한 창업체험교육과 발명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및 제도적 지원,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 대국민 인식 개선을 비롯한 문화 확산에 힘쓰며, 아울러 각 정책 주체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 ② 특허청은 학생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명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명교육센터를 확대하며 이를 위한 발명교육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 또한, 도서벽지·저소득층 등 교육소외계층 학생 대상 발명교육 지원에 힘쓰며, 발명·창업체험교육 사업 연계를 위해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 수업 기반 메이커교육을 포함한 창업체험교육과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과 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교원 연수를 운영하며 교원 대상 인식 확산에 힘쓴다. 아울러 지역 창업체험센터, 발명교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학생 체험교육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조 (정보교환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각 기관은 협력관계 유지와 메이커교육을 포함한 창업체험교육과 발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원활한 공동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효력 및 협력기간)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밀유지) 각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체계적 홍보) 각 기관은 공동 협력의 성과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한다.

제7조 (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 조정 또는 결정한다.

2018년 7월 20일



차관

청장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代
대

교육감 代
대

교육감 代
대



교육감 代
대

교육감 代
대

교육감 代
대



교육감 代
대

교육감 代
대

교육감 代
대



교육감 代
대

교육감 代
대

교육감 代
대